

「핵심교양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0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10. 3. 1.) → 2021. 2. 15. 개정 판 (시행 2021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8/compare?from=83&to=107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5:2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<u>성경</u>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	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21-02-15>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교양 <u>성경</u> 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 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-02-15>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, 교목부장, 신학대학교수들, 교양교직과장, 교양교육 센터담당자로 구성한다.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.	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, 교목부처장, 신학과장, 핵심교양교수 , 스미스학부대학장 , 교목팀장,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 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-02-15>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.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교양 <u>성경</u> 교육과정 계획 2. 교양 <u>성경</u> 교재발간 3. 교양 <u>성경</u> 교수법 연구 4. 교양 <u>성경</u> 교수 배정	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-02-15> 1.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. 핵심교양 교재발간 3.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. 핵심교양 교수 배정 [전면개정: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핵심교양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교양 성경위원회(이하"를 "핵심교양위원회(이하"로 한다.

제2조 중 "교양 성경 강좌"를 "핵심교양강좌"로 한다.

제3조 중 "교목처장, 교목부장, 신학대학교수들, 교양교직과장, 교양교육 센터담당자로 구성한다."를 "교목처장, 교목부처장, 신학과장, **핵심교양교수**, **스미스학부대학장**, 교목팀장, **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**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-02-15>"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**핵심교양** 교육과정 계획
2. **핵심교양** 교재발간
3. **핵심교양** 교수법 연구
4. **핵심교양** 교수 배정

[전면개정: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